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자동차등록령  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중고자동차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이행 여부 신고기간을 연장하고,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 방지를 위해 말소등록번호의 재사용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, 세법의 상속 기간에 맞춰 자동차 상속 말소등록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가. 말소등록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 연장(안 제20조 제3호, 제32조)

- 중고차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대외무역법」의 수출·수입 승인 유효기간(1년)에 맞추어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을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

나.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 삭제(안 제21조 제2항)

-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적 목적으로 발급된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말소 등록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 삭제

다. 상속에 따른 말소등록기간 연장(안 제31조 제1항)

- 세법의 상속기간(상속개시일 말일로부터 6개월)과 자동차 상속말소 등록 기간(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)이 달리 적용되어 상속인에게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상속기간 일원화

#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##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3호 중 “9개월”을 “1년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상속개시일부터 3개월”을 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6항제7호”를 “제5항제7호”로 한다.

제32조 중 “9개월”을 “1년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 등록 신청)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: 말소등록일부터 <u>9개월</u> 이내</p> <p>4. (생략)</p> <p>제21조(등록번호의 부여방법) ① (생략)</p> <p>②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(이하 “등록번호판”이라 한다)이 회수되고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. <u>다만,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 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</u></p>	<p>제20조(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 등록 신청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1년</u>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1조(등록번호의 부여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단서 삭제&gt;</u></p>

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.

제31조(말소등록 신청)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(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) 이내에 자동차등록증,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,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,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,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3. 제6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

4. (생략)

② ~ ⑨ (생략)

제32조(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)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

제31조(말소등록 신청) ① -----  
-----  
-----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-----  
-----  
-----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제5항제7호-----  
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32조(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) -----  
-----  
-----

일부터 9개월 이내에 국토교통  
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 
당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 
해당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 
신고하여야 한다.

----- 1년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